

특 정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 –

2023. 5.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3건	3	0	0	0	0	0	0	0
1	☆☆☆☆☆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2	◇ ◇ ◇	@@ %%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	1							
3	□□□□□□□	`◎◎면 ☆☆☆리 배수관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1.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
2.	@@ @@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5
3.	○○면 ☆☆☆리 배수관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13

일련번호	1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시 ☆☆☆☆☆에서는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2020.6.29. □□□□□(주)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계	도급	관급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 ■	축제 L=1.6km	7,086	5,813	1,273	2020.6.29. ~ 2023.12.21.	□□□□□(주) ○○○	

1.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
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
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
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12.16.)」 제90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¹⁾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 ☆☆☆☆☆에서는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임에도 품질시험 계획을 미승인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토석정보공유시스템²⁾(TOCYCLE) 정보 미입력 및 공사감독 업무 소홀

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정보 미입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 ☆☆☆☆☆에서는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사토량이 46,820m³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입력 대상임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토석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

1)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함.

2)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나. 공사감독 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 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 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 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 되어 있는 공정을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사토처리 부적정

@@시 ☆☆☆☆☆에서는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사토처리에 대하여 당초 설계 시 운반거리 $L=15.0\text{km}$ 을 반영하였으나,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본 공사현장 인근 약 $L=1.52\text{km}$ 에 사토처리가 가능한 사업현장이 있어 운반거리 감소($L=13.48\text{km}$)로 예산절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반영 감액 가능).

2) 가설교량 연결 토류벽³⁾ 설치 부적정

교량 재가설에 따른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가설교량을 반영하고, 가설교량과 기존 도로와의 연결부위에 토류벽 5경간($L=10.0\text{m}$)을 설치하도록 당초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2023.3.13.) 토류벽이 2경간만 설치되어 도로 사면 보호 미비, 유실 등으로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추가 시공이 필요하고, 사업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 절토 및 성토의 측면을 지지하기 위한 벽

일련번호	2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시 ◇◇◇에서는 “@@ @@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2021.2.19. @@건설(주) 외 1개사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계	도급	관급			
@@ @@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		■ ■ ▲ ▲	도로 확포장 L=2.86km	15,172	9,851	5,321	2021.3.12. ~ 2026.3.27.	@@건설(주) ○○○외 1	

1.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 결과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 ◇◇◇에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임에도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설계의 안전성 미검토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12.16.)」 제90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⁴⁾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와 20㎡이상의 시험실 규모를 갖추고,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1명 이상과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 ◇◇◇에서는 “@@ @@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계획을 미승인하고,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재해·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사항 미이행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4)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함.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및 제1조의 4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협의 내용이 이행상황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사업자는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 ◇◇◇에서는 “@@ @@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착공 및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공사 현장에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공 통보서, 공사 중지 통보서 및 재개 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공사 현장에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않았다.

4.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 ◇◇◇에서는 “@@ @@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행자용 울타리 및 방음벽을 구입하면서 중소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구입하여 중소기업자 다수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비 31,381천 원⁵⁾을 낭비하였다.

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 87.995%적용

5. 공사비 과다계상 등 공사감독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 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을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시 ◇◇◇에서는 “@@ @@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석 자재가 당초 설계시 수량 오류로 과다하게 반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지 않고 있다.

6. 부진공정 만회대책 미수립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4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지방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 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 ◇◇◇에서는 “@@ @@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3.12.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21.9.30. 토지 보상협의 및 도시가스관 이설 지연이란 사유로 공사를 중지하였고, 2023.3.3. 공사 중지를 해제하여 당초 준공 예정일인 2025.3.12. 보다 약 12개월 늦어진 2026.3.27. 공사 준공예정일이 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공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기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시 ◇◇◇에서는 “@@ @@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을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 중지 및 해제 현황(건설사업관리용역 포함)은 [표 2]와 같다.

[표 2] 공사 중지 및 해체 현황(건설사업관리용역 포함)

사 업 명	착 공 일	공사(용역) 중지일	공사(용역) 해제일	비고
@@ @@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	2021.3.12.	2021.9.30.	2023.3.3.	
@@ @@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22.12.20.	2022.12.29.	2023.3.6.	

따라서 위 부서에선 토목공사의 착공시기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여 착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본 공사의 진행이 어려움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도 추가로 용역 중지하게 되어, 2022.12.20.부터 2023.3.5.까지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낭비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3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면 ☆☆☆리 배수관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시 □□□□□□□에서는 “○○면 ☆☆☆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업 추진 중에 있다.

[표1]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면 ☆☆☆리 배수관 확장공사	○○	☆☆☆	송수관로(D100) L=3.6km 배수관로(D75~100) L=3.2km	919	2022.01.11.	2022.01.18. ~ 2023.01.17. (중지중)	주\$\$\$건설 ○○○	

1. 품질시험계획 미이행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20㎡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수립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2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표’에 따르면 품질시험기구에 대해 정해진 주기로 교정⁶⁾검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에 교정검사필증을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 □□□□□□에서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사에서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않았고 시공사는 감사일 현재까지 품질시험장비(압축강도시험기, 저울, 온도계, 버니어캘리퍼스, 공기량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아래 [표2]와 같이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아 품질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품질시험 미 실시 현황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 물량	시험빈도	시험계획 횟수	품질시험 현황			비고
					계	미 실시	시기 미도래	
되메우기	흙의역학시험(흙다짐)	5,506㎡	토질변화시마다	3회	3	2	1	
	흙의물리시험(입도)							
	흙의역학시험(현장밀도)		1,000㎡마다	6회	6	3	3	
	흙의물리시험(함수비)							
콘크리트	콘크리트시험 (공기함유량,슬럼프, 압축강도,휨강도)	1,474㎡	150㎡마다	10회	10	6	4	

※ @@시 제출자료 재구성

6)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제2항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 방치 등 폐기물관리 부적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본 공사는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폐콘크리트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1의 2]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 □□□□□□□에서는 2022년 11월 23일까지 발생한 20ton 정도의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을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사무실 옆에 쌓아둔 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공사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

계 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같은 지침 제118조에 따라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제출하는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 등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시 □□□□□□에서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면 청하리 배수관로 총연장 15,393m 구간에 대해 터파기 시공 폭이 당초 0.83~1.15m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이 중 12,005m에 대하여 관로 터파기 폭을 0.65m~1.10m로 임의대로 시공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공사감독은 현장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사업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감액 00,000천 원)

[표3] 송·배수관로 터파기 시공 현황

구 분	당초설계				시 공		비 고
	포장상태	규 격	연 장	B	연 장	B	
송수관로	ASP	D100, D100	805 m	1.09 m	805 m	1.10 m	배수관로 동시매설
	ASP	D100	367 m	0.87 m	367 m	1.10 m	단독매설
	ASP	D100, D50	1,148 m	1.05 m	1,148 m	1.10 m	배수관로 동시매설
	ASP+CON' C	D100, D100	310 m	1.05 m	310 m	1.10 m	배수관로 동시매설
	CONC	D100, D100	441 m	1.07 m	441 m	1.10 m	배수관로 동시매설
	ASP+CON' C	D100, D100	149 m	1.05 m	149 m	1.10 m	배수관로 동시매설
	CONC	D100, D100	398 m	1.07 m	398 m	1.10 m	배수관로 동시매설
	토사	D100, D100	14 m	1.15 m			배수관로 동시매설 미시공

구 분	당초설계				시 공		비 고
	포장상태	규 격	연 장	B	연 장	B	
	소 계		3,632 m		3,618 m		
1호배수	토사	D100, D100	13 m				송수관로 동시매설 미시공
	CONC	D100, D100	399 m				송수관로와 동시매설
	ASP+CON' C	D100, D100	148 m				송수관로와 동시매설
	CONC	D100, D100	441 m				송수관로와 동시매설
	ASP+CON' C	D100, D100	315 m				송수관로와 동시매설
	ASP	D100, D100	339 m				송수관로와 동시매설
	소 계		1,655 m				
1-1호배수	CONC	D50	109 m	0.85 m	109 m	0.65 m	
	소 계		109 m		109 m		
1-1-1호배수	CONC	D50	100 m	0.85 m	100 m	0.65 m	
	ASP+CON' C	D50	79 m	0.83 m	079 m	0.65 m	
	CONC	D50	358 m	0.85 m	358 m	0.65 m	
	소 계		537 m		537 m		
1-2호배수	ASP	D50	910 m	0.87 m	910 m	1.00 m	
	소 계		910 m		910 m		
1-3호배수	ASP+CON' C	D75	58 m	0.83 m			미시공
	ASP+CON' C	D75	610 m	0.83 m	610 m	0.65 m	
	CONC	D75	52 m	0.85 m	52 m	0.65 m	
	소 계		720 m		662 m		
1-3-1호배수	CONC	D50	142 m	0.85 m	142 m	0.65 m	
	토사	D50	40 m	0.93 m	40 m	0.70 m	
	CONC	D50	305 m	0.85 m	305 m	0.65 m	
	소 계		487 m		487 m		
1-3-2호배수	CONC	D50	192 m	0.85 m	192 m	0.65 m	

구 분	당초설계				시 공		비 고
	포장상태	규 격	연 장	B	연 장	B	
	소 계		192 m		192 m		
1-3-3호배수	CONC	D50	151 m	0.85 m	151 m	0.65 m	
	소 계		151 m		151 m		
1-4호배수	CONC	D50	594 m	0.85 m	594 m	0.65 m	
	소 계		594 m		594 m		
1-5호배수	CONC	D50	194 m	0.85 m	194 m	0.65 m	
	소 계		194 m		194 m		
1-6호배수	ASP	D50	806 m	1.09 m			송수관로와 동시매설
	소 계		806 m				
2호배수	ASP	D75	807 m	1.09 m			송수관로와 동시매설
	소 계		807 m				
2-1호배수	ASP	D50	7 m	0.87 m	7 m	1.00 m	
	ASP+CON'C	D50	68 m	0.83 m	68 m	1.00 m	
	하천횡단	D50	28 m				미시공
	ASP+CON'C	D50	577 m	0.83 m	577 m	0.85 m	
	CONC	D50	62 m	0.85 m	062 m	0.85 m	
	소 계		742 m		714 m		
2-1-1호배수	CONC	D50	609 m	0.85 m	589 m	0.65 m	미시공 20m
	소 계		609 m		589 m		
2-2호배수	CONC	D50	266 m	0.85 m	266 m	0.65 m	
	소 계		266 m		266 m		
2-3호배수	CONC	D50	142 m	0.85 m	142 m	0.65 m	
	소 계		142 m		142 m		
계			12,553 m		9,165 m		
D50 분기관	ASP+CON'C	D50	25 m	0.83 m	25 m	0.65 m	
	CONC	D50	651 m	0.85 m	651 m	0.65 m	
계			676 m		676 m		
가정분기관	ASP	D13	71 m	1.09 m	71 m	0.65 m	
	ASP+CON'C	D13	316 m	0.83 m	316 m	0.65 m	
	CONC	D13	1,496 m	0.85 m	1,496 m	0.65 m	
	토사	D13	281 m	1.15 m	281 m	0.65 m	

구 분	당초설계				시 공		비 고
	포장상태	규 격	연 장	B	연 장	B	
계			2,164 m		2,164 m		
①소 계 (현재까지시공)					12,005 m		
②소 계 (미시공)					133 m		
③소 계 (동시매설시공)					3,255m		
총 계 (①+②+③)			15,393 m		15,393 m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품질관리 업무 소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행정처분하는 등 적정하게 조치하시고, 방치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